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3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2022.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장현자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였으나 현재는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입니다(갑제1호증).

2. 원고와 피고간의 이혼소송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08.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혼소송(2018드단 5823)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소송 중인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금 47,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9. 12. 02. 동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관할 2019. 12. 03. 접수 제45082호로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갑제2,3호증).

이에 원고는 2020. 12. 29 위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채권액 전액(금47,500,000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금 제1411호로 해방공탁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신청(2020 즈기 3039호)을 하였고 2020. 12. 31. 집행취소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는 2021. 01. 05. 접수 제 212호로 말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이후, 원.피고간 위 이혼소송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

하되, 그중 47,000,000원은 2021. 04. 30.까지, 나머지 23,000,000원은 2021. 12. 31.까지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의 내용으로 2021. 03. 11.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갑제5호증).

3.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위 이혼소송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이를 수령거절하였으므로 2021. 12. 30.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 1,570,959원을 합한 금 71,570,959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년 금 제 1308호로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 사건 재산분할금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또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하여 집행한 2019. 12. 02.자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도 변제공탁 후 2022. 01. 07. 집행법원에 채권소멸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고 2022. 03. 11. 가압류 취소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7호증).

4. 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2022. 0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을 통하여 원고가 공탁한 변제공탁금 금 71,570,959원을 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원고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 금 47,500,000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압류 추심하여 출급한

으로써 총 119,070,959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8호증).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은 금 70,000,00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으로 이는 원고가 변제공탁한 돈으로써 피고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해방공탁금 금 47,500,000원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함으로써 금 47,5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0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